

# 근무 중 다치면...

# 1

## 고용주에게 알리십시오

*부상 내용을 자세히*

부상 사실을 접수하고 나면  
고용주는 다음의 경우 해당 사고를  
72시간 이내에 WCB에  
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.

- 부상자에게 의료적  
치료가 필요한 경우  
또는
- 부상자가 사고일 이후  
일을 할 수 없는 경우

# 2

## 주치의에게 알리십시오

*일하다 다치셨음을*

가정의는 해당 사고를  
48시간 이내에 WCB에  
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.

# 3

## WCB에 알리십시오

*부상보고서를  
WCB로 즉시  
보내십시오!*

보고서 양식은 고용주 또는  
어느 WCB 사무소에서나  
구할 수 있습니다.

## 미루지 말고 일찍 보고하십시오!

보고서 보내실 곳

우편: P.O. Box 2415, Edmonton, AB T5J 2S5

팩스: 에드몬턴 427-5863 또는 무료전화 1-800-661-1993

자세한 사항 문의

에드몬턴 498-3999 또는 무료전화 1-866-922-9221

웹사이트: [www.wcb.ab.ca](http://www.wcb.ab.ca)



주: 고용주는 이 포스터를 근로자보상법(Workers' Compensation Act) 제145조에 의거하여 종업원들이 볼 수 있는  
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